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142
----------	------

2022년 4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 : 2022년 3월 10일
- 다. 회부일 : 2022년 3월 16일
- 라. 상정일 :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3월 31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대현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6. 30. 만료 예정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의 필요성

- 시립강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 시설규모 : 대지 1,983㎡, 건물 5,125㎡ (지상 4층, 지하 2층)
 - 주요시설 : 헬스장, 체육관, 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민간위탁기간: 3년(2022. 7. 1. ~ 2025. 6. 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176백만원('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63백만원, 사업비 689백만원, 물건비 248백만원, 경상이전비 199백만원, 자본지출 50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민간위탁 동의안 총괄 내역

- 청소년시설의 민간위탁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은 총 6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제306회 임시회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3142	강동 청소년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 개관일자 : 2012. 10. 01. - 시설규모 : 부지면적 1,983㎡/ 건물 5,125.88㎡ - 민간위탁기간 : 3년(2022.07.01 ~ 2025.0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176백만원(2022년)
3143	청소년 드림센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삼성동 171-1) - 개관일자 : 2012년 10월 1일 - 시설규모 : 부지 22,650㎡, 건물 6,462㎡(1·4·5층) - 민간위탁기간 : 3년(2022.07.01 ~ 2025.0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2,572백만원(2022년)
3144	은평청소년 증장기슭터	재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은평구 통일로 92길 37-6(불광동) 동산홈타운 - 개관일자 : 2017.12.12. - 시설규모 : (대지) 143.99㎡, (연면적) 214.64㎡ - 이용대상 : 중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여자청소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2.07.01 ~ 2025.0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47백만원(2022년)

의안 번호	시 설 명	구분	위탁시설 개요
3145	망우청소년 단기쉼터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중랑구 송림길 156 - 시설규모 : (대지) 241.56㎡, (연면적) 483.12㎡, (전용면적) 241.56㎡ - 개소일자 : 2015.01.01. - 이용대상 : 9~24세 가정 밖 청소년(여성) - 위탁예정기간 : 2년(2022.07.01 ~ 2024.06.3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협약방식에 의한 재계약 - 소요예산 : 624백만원(2022년)
3146	강북청소년 드림센터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 - 시설규모 : (대지) 212.2㎡, (연면적) 333.37㎡, (전용면적) 106.86㎡ - 이용대상 : 위기·가정밖청소년(남자) - 위탁예정기간 : 2년(2022.07.01 ~ 2024.06.3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협약방식에 의한 재계약 - 소요예산 : 624백만원(2022년)
3147	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	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 재 지 : 중랑구 용마산로 지하227, 723-106호(107호,303호 포함) - 시설규모 : 지하1층 71㎡, 지하3층 58㎡, (총 전용면적 129㎡) - 개관일자 : 2015.04.01. - 위탁예정기간 : 2년(2022.07.01 ~ 2024.06.3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협약방식에 의한 재계약 - 소요예산 : 238백만원(2022년)

○ 민간위탁 조례는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기에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의 동의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2021.12.30. 조례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소년시설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청소년 활동시설 1개소(강동청소년센터), 청소년 복지시설 3개소(망우단기쉼터, 은평중앙기쉼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기타 청소년시설 2개소(중랑성문화센터, 청소년드림센터) 등 총 6개소임.

※ 재위탁·재계약의 정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 새로운 단체 등에 위탁하는 재위탁은 3건, 기존의 운영 단체에게 위탁하는 재계약은 3건이며, 2년간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의 경우, 성과보고서를 통해 재계약의 적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1) 성과지표의 적정성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 제3항은 민간위탁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효과성 평가, 위탁사무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청소년 활동시설과 보호시설은 설치 목적이 상이하어, 시설의 특성별 다른 전문성과 운영방식이 요구되며, 이를 감안하여 각각 다른 전문성을 가진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동일한 지표로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어, 위탁사무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기대했던 수준의 효과를 도출해냈는지 여부, 추진과정에서 효율적 방법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고,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는바,
 - 금번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가 위탁목적에 부응하는 성과를 달성하거나, 기대한 민간위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이 추진한 민간위탁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내실있는 성과보고서 제출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청소년 활동·보호 등 시설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시설별 지표를 달리하거나,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동시에 적용하여 평가하는 등 청소년 시설의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평가를 위하여 지속적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의 평가지표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총점			100	
1. 운영기반 (25점)	1.1. 운영전략 관리 (10점)	1.1.1. 중장기발전계획의 적정성	4.00	
		1.1.2. 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4.00	
		1.1.3. 자체평가 및 환류의 적정성	2.00	
	1.2. 조직 및 인력 관리 (12점)	1.2.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4.00	
		1.2.2. 임용 및 복무관리 적정성	4.00	
		1.2.3. 직원교육 지원의 적극성	2.00	
		1.2.4. 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 적정성	2.00	
	1.3. 재정 및 자원 관리 (13점)	1.3.1. 회계 관리 적정성	7.00	
		1.3.2. 사업예산 집행 적정성	2.00	
		1.3.3. 재산 및 물품관리 적정성	2.00	
		1.3.4. 시설 및 안전 관리 적정성	2.00	
	2. 사업운영 (30점)	2.1. 프로그램 개발 (5점)	2.1.1.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의 전문성	5.00
		2.2. 사업운영 관리 (15점)	2.2.1.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5.00
2.2.2. 특화전문 활동 동아리 운영의 활성화 수준			5.00	
2.2.3. 프로그램 질 관리의 체계성			5.00	
2.3. 대외협력 (10점)		2.3.1. 지역 연계협력의 체계성	5.00	
		2.3.2. 홍보 활성화 수준	5.00	
3. 사업성과 (35점)	3.1. 사업운영 실적 (15점)	3.1.1. 청소년 시설이용률	7.50	
		3.1.2. 청소년 특화전문활동 사업비 수준	7.50	
	3.2. 지역사회 기여도 (10점)	3.2.1. 성과의 지역사회 확산 노력	5.00	
		3.2.2. 우수한 성과의 창출	5.00	
	3.3. 만족도 관리 (10점)	3.3.1.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	4.00	
		3.3.2. 고객만족도 수준	6.00	
가·감점(5점)	A. 가점 : 시정기여도		5.00	
	B. 감점 :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 개선		-5.00	

2) 위탁사무의 목표 제시

-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수탁단체에게 과도하게 포괄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거나, 극히 단순화한 ‘위탁사무’라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포괄적이거나 단순화된 청소년정책이 수탁단체에 구체적 설명없이 전달될 경우 수탁단체의 사무목적이 왜곡될 수 있으며, 시설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서울시 청소년정책을 각 시설 특성에 맞는 시설의 운영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청소년정책을 구체화하고, 시설별 사업목표를 제시하여, 시설별 합리적인 성과평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모호한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시설별 명확한 목표설정과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민간위탁 기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나.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 강동청소년센터는 21억 7천만원의 민간위탁금과 20명(정규직 20명, 계약직 6명)의 인력으로 17개 분야 120개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활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사업 및 프로그램 현황 〉

구 분	프 로 그 램 명
교육문화	교육문화강좌, 와글페스티벌, 강사간담회
생활체육	건강강좌
진로활동	우리가 행복해지는 시간, 진로토크콘서트진담, 진로질RUN, 드림업, 진로직업박람회 등 7개 사업
창의인성활동	창의적체험활동, 청소년소통공작소WAGLE, 마음이자리는인성상자, 무한상상아트메이커 등 13개 사업
봉사활동	손으로 만나고 나누는 세상, 3GO봉사스쿨, 김장봉사"김치Voluntee", 우리동네지킴이 청바지
동아리활동	대학생지원지도자"한가람", 청소년재능기부단, 청소년과학동아리"원소기호 번" 등 11개 사업
문화교류활동	도깨비투어, 에코캠프, 강하다(강동청소년센터 동아리는 하나다), 미(ME)미(美)캠프 등 7개 사업
가족활동	위드나눔미, 재(생)미(래)패밀리, 생각수북소나기, 달(콤하고)고(마운)(마음)나(눔)
마을연계활동	지역사회봉사단시너지, 기관네트워크, 모두 多 함께 해, 청소년센터는 처음이지 등 9개 사업
자율참여활동	재(생)미(래)탐방대, 청소년운영위원회, 세젤편콘서트,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등 23개 사업
특화활동	3D퓨처랩체인지업(C.U), 우리스마트하게놀자, 런닝맨 미션을 완수하라, 사연있는피규어 등 17개 사업
상담활동	걱정말아요 그대, 슬기로운부모수업
기타사업	홍보출판사업, 조사연구사업
방과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운위	청소년운영위원회
찾아키는센터	UN-Tact 모바일 게임대회, 도깨비투어, 진로토크콘서트진담, 문화가있는센터, 잘먹겠습니다 등 7개 사업
유스데이	펀데이메이데이, 랜선키친"강과더-오리를멈추지마", 서울 YOUTH EXPO, 세젤편콘서트 등 5개 사업
코디	마을 속 청소년코디네이터
특성화	재(생)미(래)연구소-상생PLAY
기타사업	강동구청소년의회, 강동구아동구정참여단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인력 현황 〉

구분	합계	정규직										계약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기간제
정원	26	26	1	1	1	3	5	8	3	2	2	-	-
현원	26	20	1	-	1	4	2	8	2	2	-	6	6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조직 현황 〉



- 평생교육국은 강동청소년센터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제공하는 시설로, 청소년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제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보이며,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다만, 강동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제공하지 않고
 운영비 중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어, 청소년센터는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여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청소년센터 21개소가 운영비 마련을
 위해 창출해야 할 비용은 576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 2021년 청소년센터 예산(749억 원) 중 시비 보조율은 23.1%(173억원)임.

〈 2021년 청소년시설 운영예산 중 시비보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총 계 (①+②)	①청소년센터(21)			②유스호스텔(2)	비 고
		계	자립형	지원형		
예산 규모	81,315	74,908	57,402	17,506	6,407	
시 보조금	17,274	17,274	9,862	7,412	지원 없음	
보조율(%)	-	23.1	17.2	42.3	-	

출처 : 코로나19 대응 관련 청소년시설 손실보전계획(2021.5.28., 청소년정책과-9738)

- 청소년센터가 지나친 수익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수익성 추구 수준이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민간위탁을 제한하는 범위인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 규모의 민간위탁금 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제한영역 》

- ▶ 주민의 권리·의무 및 의식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무
- ▶ 법적 근거 등 합리적 사유가 없는 사회·공익서비스 분야의 사무
- ▶ 위탁시 지나친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무
-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상 “위탁” 용어를 사용한 경우라도 실질적 의미가 민간위탁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

출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기획조정실, 2021.10) 9페이지 발췌

- 둘째,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동청소년센터는 2012년 7월 개관 이후 계속하여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여 왔고, (사)한국청소년연맹은 서울시로부터 7개의 시립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추진현황 〉

- 1차 2012.07.01.~2015.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공개모집
- 2차 2015.07.01.~2017.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재계약
- 3차 2017.07.01.~2020.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공개모집
- 4차 2020.07.01.~2022.06.30. (사)한국청소년연맹 재계약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사)한국청소년연맹에서 위탁받은 시설에서 인사·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조직운영, 재산관리 미흡, 운영규정 관리 미흡 등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지적¹⁾받았고, 이러한 공통 지적사항은 강동청소년센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바,
- 수탁단체의 관리운영의 역량이나 투명성이 현저히 낮은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성과 함께 시설의 관리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강동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 2019년 강동청소년센터의 서울시 지도점검 지적사항
 - 종사자 임용절차 미준수
 - 경력인정 자료 부실 등
 - 계약지출업무시 관련 구비서류 징구 소홀 등
- 2020년 강동청소년센터의 서울시 지도점검 지적사항
 - 재물조사 미흡 등
 - 비품 및 소모품 기록 미흡 등
 - 출장신청서 수기 관리 등 미흡 등
- 2021년 강동청소년센터의 서울시 지도점검 지적사항
 - 재물조사 계획 미흡 등
 - 비품 및 소모품 수불사항 정리 미흡 등
 - 출장여비 지출 미흡 등

1) 2014년 동대문청소년센터 특정감사, 2016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현장점검, 2016년 중랑청소년센터 종합성과 평가, 2016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종합성과평가, 2018년 및 2020년 강동청소년센터 종합성과 평가 등 결과

〈 (사)한국청소년연맹의 시립시설 수탁현황 〉

	시설명	위 치 (주소)	수탁기관	위탁기간
1	동대문청소년센터	동대문구 제기로 33길 25(청량리동)	(사)한국청소년연맹	'21.07.01~'24.06.30
2	중랑청소년센터	중랑구 용마산로 217(면목동)	(사)한국청소년연맹	'21.07.01~'23.06.30
3	구로청소년센터	구로구 구로동로 141(구로동)	(사)한국청소년연맹	'21.01.01~'22.12.31
4	강동청소년센터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강일동)	(사)한국청소년연맹	'20.07.01~'22.06.30
5	활동진흥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신대방동)	(사)한국청소년연맹	'22.01.01~'23.12.31
6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영등포구 영신로 200(영등포동)	(사)한국청소년연맹	'20.07.01~'23.06.30
7	금천단기쉼터	강남구 봉은사로 1114길 43(삼성동)	(사)한국청소년연맹	'20.01.01~'22.12.31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142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 6. 30. 만료 예정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강동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의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 93길 47
- 시설규모 : 대지 1,983㎡, 건물 5,125㎡ (지상 4층, 지하2층)
- 주요시설 : 헬스장, 체육관, 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2.7.1 ~ 2025.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176백만원('22년)
- 산출근거
 - 인건비 963백만원, 사업비 689백만원, 물건비 248백만원, 경상이전비 199백만원, 자본지출 50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27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이문정(☎2133-4124)